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73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 박덕흠 • 박수민 • 강대식

강승규 • 박정하 • 이양수

최은석 · 김민전 · 서천호

성일종 • 윤영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 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홀로 키우던 여성이 지인들에게 자신의 직업과 채무상태에 관한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것을 알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렇게 주변인과의 관계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채권추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중대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 대해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 편 징역과 과태료의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 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 조부터 제17조까지).

법률 제 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의"를 "제15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3.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벌칙) <u><신 설></u>	제15조(벌칙) 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 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 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 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① (생 략) <u><신 설></u>	9에 처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④
자 4.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현행과 같음) ⑤

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생 략)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저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 설>

- 3.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 략)
-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 5. ~ 7. (생략)
- ③ ④ (생 략)

	개인에게도 3천만원 이하의	<u>벌</u>
	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	느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	하-
	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	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
	지 아니하다.	
ᅦ	17조(과태료) ①	
	1. · 2. (현행과 같음)	
	3.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지	<u> </u>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_____
- 1. ~ 3. (현행과 같음)

-----.

<삭 제>

- 5. ~ 7.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